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제정 2012.02.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5호
일부개정 2012.04.0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7호
일부개정 2012.08.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2호
일부개정 2013.01.1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2호
일부개정 2014.01.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2호
일부개정 2014.09.1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1호
전부개정 2015.02.0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업건강 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이란 기술 또는 경영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가 기술,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또는 기업성장통의 원인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처방”이란 진단결과에 따라 확인된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업에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3조(위원회) ①중소기업 건강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관할 지역 중소기업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지역본(지)부장
2.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점장
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 영업본부장 또는 지점장
4. 지방청 건강관리 업무 담당 과장
5. 중소기업 건강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

④위원회 개최, 위원의 임기, 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진단기관) 진단 역량과 자체 지원사업 및 심사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한다.

1. 지방청
2. 중진공 지역본(지)부
3. 신보 영업점 등
4. 기보 지점

제5조(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특례) 청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건강관리」와 「경영개선 건강관리」의 특례조항을 두어 진단신청 및 접수,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제3장 단계별 처리내용

제6조(처리기한) ①기업이 진단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을 완료하고 처방내용을 포함한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이 기업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따른 진단 신청·접수 기간은 월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 신청·접수한 날은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단 신청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 ①진단신청일 현재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 제2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진단신청 제한 대상 기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신청 및 접수) ①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애로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상담·신청할 수 있다.

1. 정책자금 : 중진공 지역본(지)부
2. 신용보증 : 신보 영업점 등
3. 기술보증 : 기보 지점
4. 기타 : 지방청

②진단기관은 정책 또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진단기관의 관리 기업으로서 경영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진단 실시) ①진단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4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진단기관은 제4조 제2호 진단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신청 기업의 업종, 생산품 및 보유기술, 애로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④진단 실시 일수는 별표 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단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단기관이 2~4 Man-Day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제9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일과 제2항에 따른 PT실시는 각각 0.5MD에 포함할 수 있다.

⑤진단비용은 1MD당 30만원으로 하며 진단기관별 해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한다.

제10조(진단보고서 작성) ①진단기관 또는 전문가는 중진공의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결과 회신) ①진단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처방내용 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진단기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 평가 실시 등) ①진단기관은 전문가가 제9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는 전문가 관리 및 운용방안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해 우수 전문가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와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진단에 대한 만족도, 경영개선에 따른 성과 등 조사·분석
2. 진단기관 자체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관리
3.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제안 및 진단기업의 건의사항 수렴

제4장 보칙

제14조(사업관리비 지급) 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진단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청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성과가 우수한 진단기관 임직원, 전문가, 지원기관 임직원에게 대해 포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위원회, 진단기관, 전문가 등 건강관리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진단기업의 비밀을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진단기업은 관계자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진단기업은 관계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진단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지침의 제정 등) ①청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은 이 요령 및 운영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존속기한)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8년 02월 04일까지로 한다.

②제5조의2제3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환경·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1호를 폐지한다.

진단 신청 제한 대상

1.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휴·폐업중인 기업
4.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
5.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
6.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7.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별표 제2호】

상시 근로자수별 진단 실시 일수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제조업(C) ¹ · 광업(B) · 운수업(H) ² 도매 및 소매업(G) ³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⁵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5인 미만	5인 이상 ~ 50인 미만	50인 이상

- 1] 제조업(C)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운수업(H)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도매 및 소매업(G)중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중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